

광주지방법원 2024. 11. 13 선고 2024가단53581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30.

판결 선고2024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3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3. 1.부터 2024. 9. 12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단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'는 '피고'로 본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박상수

별지